2020년 제1회 기장군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

기장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

□ 공개일 / 공개방법
-'20.9.21., 기장군홈페이지(www.gijang.go.kr) 게시

□ 2020년 제1회 기장군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
○ 기장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'20.8.13.(목) 2020년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,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1건을 심사하여
-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1건에 대해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불승인 결정

【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】

구 분	주요 내용
취업제한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
취업불승인	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*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*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, 경영개선, 임용 전 종사 분야,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
취업가능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
취업승인	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(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)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

□ 2020년 제1회 기장군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

연번	퇴 직 당 시			취 업		심사결과	결정사유
	소 속	직위(직급)	퇴직일	업 체	직 위		
1	기장군청	휴먼도시과장 (지방행정 사무관)	2017.6.30.	기장군 도시 관리 공단	응급 관리 요원	취업승인	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
						업무취급 불승인	법 제18조의2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